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3. 3.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기획조정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제안설명서

설명자: 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규제입증책임제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자치법규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규제심사 이행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규제의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 및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임명 또는 위촉대상을 구체화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3. 2. 1일부터 2.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 2023. 2.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규제개혁 추진의 자치법규상 근거 마련 및 규제입증책임제의 제도적 안착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923024
----------	----------

제출년월일: 2023. 3. 3.  
제출자: 달서구청장  
(기획조정실장)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규제입증책임제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자치법규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규제심사 이행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규제개혁 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제2조)
- 규제의 원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규제입증책임제 및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제11조)
  - 임명 또는 위촉대상 구체화, 위촉위원 임기 조정 등
-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제5조의2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해당
- 행정규제 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23. 2. 1.~2. 21.) 결과: 의견 없음
- 조례 · 규칙 심의 결과(2023. 2. 28.):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시책의 추진과 규제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행정규제(이하 “규제”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원칙)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야 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구청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결과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중요 규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기존규제의 정비) ① 구청장은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구에 소재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존치 필요성을 요청받은 경우 또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존규제가 제3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해당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폐지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규제 소관 국장 및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등)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관 계 법령】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또는 조례 ·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 · 인권 ·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 · 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 · 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 · 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 · 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 ·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구의회 의원 4인을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